

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건설산업체의 관내 건설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권장비율을 명시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비율 비율 명시(안 제3조 제4항)
-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→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,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
- 나. 민자사업 및 지역자재, 지역장비 참여 권장(신설)
- 지역 민자사업의 인·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
 -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건설장비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(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) 및 제47조(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)

나. 입법예고(2012. 3. 7 ~ 3. 27) 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

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“지역 건설산업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지역 건설산업”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시 지역 안”을 “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지역 건설산업체”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, 개인인 경우에는”을 ““지역 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개인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지속적으로”를 “지속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참여하는 경우”를 “참여할 때에”로, “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”을 “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”로, “ 있다.”를 “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동도급 : 49퍼센트 이상
2. 하 도 급 : 70퍼센트 이상

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지역 민자사업의 인가·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,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건설장비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 시 제4항과 제5항의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”를 “부실설계, 부실시공 방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주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”로, “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이바지한 지역건설 산업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여”를

“이바지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지원 및”을 “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고 및”을 “제고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설계 및”을 “설계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애로사항 수렴 및”을 “고충사항 수렴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도개선 및”을 “제도개선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”을 “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시장이 되”를 “부시장이 하”로, “되며”를 “하며”로, “임명 또는”을 “임명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관련하여”를 “관련한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1회에서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잔여”를 “남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”를 “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인정하는 때에 이를”을 “인정할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”을 “소집하려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.

제11조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”를 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지역 건설산업”이라 함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<u>의하여</u> 등록 등을 하고 <u>시 지역 안</u>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지역 건설산업체”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시의 책무) ① <u>시장은</u>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<u>지속적으로</u> 추진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<u>참여하는</u>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“지역 건설산업”이란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-- <u>충주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 -----.</p> <p>2. “지역 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개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시의 책무) ① <u>충주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 <u>지속해서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참여할 때 에 ----- 도급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</p>

현 행	개 정 안
권장할 수 있다.	여 ----- 있다
<신 설>	1. 공동도급 : 49퍼센트 이상
<신 설>	2. 하 도 급 : 70퍼센트 이상
<신 설>	⑤ 시장은 지역 민자사업의 인가·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,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<신 설>	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 시 제4항과 제5항의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제4조(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<u>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</u>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) - ----- ----- ----- <u>부실설계, 부실시공 방지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자랑스러운 건설인)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	제5조(자랑스러운 건설인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----- ----- <u>이바지한 지역건설산업체를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정할 수 있다.	-----.
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.
1.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	1. ----- ----- <u>이바지</u> ----- 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7조(기능) ----- -----.
1.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<u>지원 및 육성</u> 에 관한 사항	1. ----- <u>지원과</u> -----
2.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<u>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</u> 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	2. ----- <u>제고와</u> -----
3. 부실 <u>설계 및 부실시공</u> 방지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설계와</u> ----- -----
4. 지역 건설산업체의 <u>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</u> 에 관한 사항	4. ----- <u>고충사항 수렴과</u> -----
5. 건설산업관련 <u>제도개선 및 법령개정</u> 건의에 관한 사항	5. ----- <u>제도개선과</u> 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시장이 <u>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</u> 사항	7. ----- <u>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부시장이 되고</u> 부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<u>되며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 또는</u>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건설업과 <u>관련하여</u>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p>	<p>제8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----- <u>부시장이 하-----</u> ----- <u>하며-----</u> ----- <u>임명하거나 -----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관련한 -----</u></p>
<p>제9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여</u> 임기로 한다.</p>	<p>제9조(임기) ----- ----- <u>1회에서만 -----</u> ----- . ----- ----- <u>남은 -----</u> -----.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<u>통할한다.</u>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는 때에는</u>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총괄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없을 때에는</u> <u>부위원장이 -----.</u></p>
<p>제11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</p>	<p>제11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정할 때 -----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위원장이 회의를 <u>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</u>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,</u>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도로과장이 <u>된다.</u></p> <p>⑤ 그 밖에 협의회의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<u>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</u> 안에서 「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<u>소집하려면</u>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</u> <u>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1명</u>----- ----- <u>한다.</u></p> <p>⑤ ----- <u>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수당 등) ----- ----- <u>위원에게는 예산의</u> <u>범위에서 「충주시각종위원회</u> <u>실비변상조례」----- ----- ----</u>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지역건설산업기본법 [일부개정 2012.1.17 법률 제11181호]

제46조 (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관계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7조 (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